

# 감정평가서

##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번호	B12509-F-2602
건명	파산자: (주)제이엘프 파산관재인: 강종훈 (2025타경6432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민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Pacific Appraisal Co., Lt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31-10 602호(장항동,파크프라자)

대표전화 : (031)932-0072 FAX : (031)932-0073





인증서번호 : P251001-B001

심의일자 : 2025-10-01

## 가 격 심 의 인 증 서

감정서 번호	B12509-F-2602	발 의 처	본사
감정평가액	一 金 三 十 亿 三 千 零 百 万 圆 整 (\3,046,000,000.-)		
물건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1-1 아프리에프라자 6층 601호외		
평 가 목 적	경매		
거 래 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 출 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담당평가사	김평식		

### ※ 심사사항

1. 감정평가 가격의 적정성
2.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기본적사항의 확정
3. 평가방법의 적정성
4. 관련법규 및 제규정의 준수여부
5. 기타 유의사항의 참작여부

### 심사의견

적정

본 감정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심사운영규정의 심사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기에 가격심의 인증서를 발행합니다.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 김 평 식 )

(주)태평양감정평가법인 북부지사

지 사 장

김 평 식  
박 희 배



(서명 또는 인)



감정평가액 삼십억사천육백만원정 (₩3,046,000,000.-)

의뢰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법보좌관 이상민		감정평가목적	경매(인증서번호:P251001-B001)		
제출처	경매5개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파산자: (주)제이엘프, 파산관재인: 강중훈 (2025타경64320)		감정평가조건	-		
목록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참고사항	-		2025. 9.29.	2025. 9.29.	2025. 9.30.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m <sup>2</sup> ) 또는 수량	종류	면적(m <sup>2</sup> )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5개호	구분건물	5개호	-	3,046,000,000
			이하	여백		
						₩3,046,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감정평가사		申珉羽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 감정평가 개요

###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원흥역(3호선)” 남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구분건물)에 대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 2. 감정평가 기준 및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관계법규와 감정평가 이론에 근거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 3.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장가치”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을 말합니다.

#### 3.2.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감정평가 조건은 없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4.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 4.1. 감정평가 관련 규정의 검토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감정평가방식)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 ①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법인 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정평가법인 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 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 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4.2. 대상물건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상물건은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주된 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습니다.

### 4.3.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및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였습니다.

## 5. 기준시점 결정 및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합니다.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9월 29일입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실지조사는 2025년 9월 29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실지조사내용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임대내역’ 및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그 밖의 사항

- 본건의 위치는 '건축물현황도' 등으로 확인하였으며, 공부와의 물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본건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으로 인해 호별 내부 확인이 불가하여 내부 구조, 틈상가 여부 및 호별 이용상황 등의 확인은 곤란하였으나, 복도에서 육안으로 확인된 '플래너스튜디오' 라는 상호에 비추어 스튜디오 및 사무실 등의 구조/용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6층 복도의 양측 일부를 포함한 5개 호수 전체가 일체의 근린생활시설로 이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탐문조사 결과 본건 상가는 장기간(약 1~2년) 미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경매 진행 시 이해관계인 등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소유 부동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체로 거래(분양) 됩니다. 따라서, 토지·건물의 개별평가는 곤란하나,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감정평가명세표'에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배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한국부동산연구원,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토지·건물 배분비율 작성 연구」상 배분비율표 - 토지: 55%, 건물: 45%)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 대상물건 개요

### 1. 부동산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1-1			건물명	아뜨리에프라자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의원)			사용승인일	2018.08.3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상라브지붕			층수	지하 4층/지상 13층			
동수	1동			세대수 (호수)	66호			
일련 번호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	공용면적 <sup>1)</sup> (㎡)	전유+공용 (㎡)	전용률 (%)	대지권면적 (㎡)	
가	제6층 제601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소매점)	-	47.8	47.615	95.415	50.10	8.225
나	제6층 제602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의원)	-	87.69	87.352	175.042	50.10	15.089
다	제6층 제603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의원)	-	84.85	84.523	169.373	50.10	14.6
라	제6층 제604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의원)	-	79.4	79.093	158.493	50.10	13.662
마	제6층 제605호	제1종근린생활 시설(의원)	-	115.89	115.442	231.332	50.10	19.941

### ■ 공법상 제한사항

원흥동 631-1: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삼송택지개발), 중로2류(폭 15m~20m)(2013-07-04)(접합), 건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드림아이유치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 대상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로 사용되는 토지)

1)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의 '주'에 해당하는 면적만 포함하였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2. 감정평가 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주변 상황

### 2.1. 공부와 실제가 상이한 경우 및 그 내용

본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며, 물적동일성이 인정됩니다.

### 2.2. 대상물건을 감정평가에서 제외하는 경우 및 그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II. 감정평가액 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 1. 거래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	거래일자 사용승인일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ㄱ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4층 제404호	제1종근린생활시 설(의원)	79.4	2022.10.24	636,000,000	8,010,075
			-		2018.08.31		
ㄴ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11층 제1101~1105호	제2종근린생활시 설(골프연습장)	415.63	2023.08.14	3,000,000,000	7,217,958
			-		2018.08.31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2. 감정평가사례

[단가: 원 미만 절사]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위치	전유면적 (㎡)	기준시점 사용승인일	감정평가 목적	감정평가액 (원)	단가 (원/전유㎡)
a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8층 제702호	제2종근린생 활시설(골프 연습장)	251.94	2023.02.13	담보	1,824,000,000	7,239,819
			-		2018.08.31			
b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8층 제805호	제2종근린생 활시설(골프 연습장)	115.89	2024.01.10	경매	900,000,000	7,765,984
			-		2018.08.31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3. 인근지역 가격수준

주위환경	용도	층	위치	가격수준(원/전유㎡)	비고
역주변 상가지대	근린생활시설	6	-	7,000,000 ~ 7,500,000	본건 유사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IV. 부동산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 1. 거래사례비교법의 적용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합니다. 비준가액이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말합니다.

$$\text{비준가액} = \text{거래사례가격}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가치형성요인비교}$$

#### 1.1. 거래사례 선정

##### 1.1.1. 거래사례 선정 기준

-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1.1.2. 거래사례 선정

거래사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사례 중에서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에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거래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일련 번호	기호	소재지	명칭 동·층·호	용도	전유면적 (㎡)	거래일자	거래금액 (원)	단가 (원/전유㎡)
				위치		사용승인일		
가 ~ 마	L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11층 제1101~1105호	제2종근린	415.63	2023.08.14	3,000,000,000	7,217,958
				생활시설(골프연습장)				
				-		2018.08.31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거래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반영되어 있거나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않은 등 수집된 거래사례의 가격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적절한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 정 의 건	사정보정치
거래사례의 거래가격은 인근지역 가격수준을 참작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라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000

## 1.3. 시점수정

“시점수정”이란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대상물건의 기준시점이 불일치하여 가격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사례의 가격을 기준시점의 가격수준으로 적정화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점수정은 대상물건의 지역 및 용도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를 활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시점의 지수는 기준시점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지수를 적용하였습니다.

### 1.3.1. 한국부동산원 통계지수

일련 번호	지 역	유 형	적용 통계지수
가 ~ 마	경기	상업용	집합상가지역 : 경기 (23.08.14~25.09.29)
			2023년 03분기 : -0.04
			2023년 04분기 : 0.22
			2024년 01분기 : 0.36
			2024년 02분기 : 0.43
			2024년 03분기 : 0.32
			2024년 04분기 : 0.15
			2025년 01분기 : 0.07
			2025년 02분기 : 0
			2025년 03분기 : 0 (2025년 02분기 자료)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3.2. 시점수정치 산정

[시점수정치: 소수점 여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기 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 마	L	2023.08.14 ~ 2025.09.29	$(1-0.0004 \times 48 \div 92) \times (1+0.0022) \times (1+0.0036) \times (1+0.0043) \times (1+0.0032) \times (1+0.0015) \times (1+0.0007) \times (1+0) \times (1+0 \times 91 \div 91) \div 1.01538$	1.01538

## 1.4.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을 말합니다. “가치형성요인 비교”란 거래사례와 대상물건 간의 종별·유형별 특성에 따라 가치형성요인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를 각각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개별화·구체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 1.4.1.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상업용]

항 목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세 부 항 목	고객의 유동성과의 적합성	단지 내 주차의 편리성	층별 효용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심지 및 상업·업무시설과의 접근성	건물 전체의 공실률	향별 효용	
	대중교통의 편의성	건물의 관리상태 및 각종 설비의 유무	위치별 효용 (동별 및 라인별)	
	배후지의 크기	건물전체의 임대료 수준 및 임대비율	주출입구와의 거리	
	상가의 성숙도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와의 거리	
	차량이용의 편리성	건물의 규모 및 최고층수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권의 크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4.2.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일련 번호	기호	단지외부요인	단지내부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가	L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제반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L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제반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L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제반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L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제반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	L	1.00	1.00	1.00	1.00	1.000
		본건은 사례와 비교 시 제반 개별요인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1.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 1.5.1. 적용단가

[적용단가: 원 미만 절사]

일련 번호	층·호	거래사례단가(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적용단가(원/㎡)
가	제6층 제601호	7,217,958	1.000	1.01538	1.000	7,328,970
나	제6층 제602호	7,217,958	1.000	1.01538	1.000	7,328,970
다	제6층 제603호	7,217,958	1.000	1.01538	1.000	7,328,970
라	제6층 제604호	7,217,958	1.000	1.01538	1.000	7,328,970
마	제6층 제605호	7,217,958	1.000	1.01538	1.000	7,328,97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1.5.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정

[비준가액: 유효숫자 셋째 자리 미만 반올림]

일련 번호	층·호	적용단가(원/㎡)	전유면적(㎡)	비준가액(원)
가	제6층 제601호	7,328,970	47.8	350,000,000
나	제6층 제602호	7,328,970	87.69	643,000,000
다	제6층 제603호	7,328,970	84.85	622,000,000
라	제6층 제604호	7,328,970	79.4	582,000,000
마	제6층 제605호	7,328,970	115.89	849,00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 V. 감정평가액 결정

### 1. 부동산 감정평가액 결정 및 결정 의견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및 경매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구 분	감정평가액(원)
구분건물	3,046,000,000
합 계	3,046,000,000

### 2. 대상물건 감정평가액 결정

구 분	감정평가액(원)
부동산	3,046,000,000
합 계	3,046,000,000



#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나				( 내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2호	87.69	87.69	643,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75.042㎡)
				소유권	15.089			
				----- 대지권	908.2 x---- 908.2	15.089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53,650,000	
						건 물 :	289,350,000	
다				( 내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3호	84.85	84.85	62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69.373㎡)
				소유권	14.6			
				----- 대지권	908.2 x---- 908.2	14.6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42,100,000	
						건 물 :	279,900,000	
라				( 내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4호	79.4	79.4	582,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158.493㎡)
				소유권	13.662			
				----- 대지권	908.2 x---- 908.2	13.662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320,100,000	
						건 물 :	261,900,000	

# ( 구 분 건 물 ) 감 정 평 가 명 세 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마				( 내 ) 철근콘크리트구조 제6층 제605호	115.89	115.89	849,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 231.332㎡)
				소유권	19.941			
				-----	908.2 x----	19.941		
				대지권	908.2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466,950,000	
						건 물 :	382,050,000	
	합 계						₩3,046,000,000.-	
				이 하	여 백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건물의 구조             | (4) 이용상태 |
| (5) 설비내역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 인접 도로상태등           |          |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9) 공부와의 차이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원흥역(3호선)'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일대는 역주변으로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이 밀집되어 있고 후면으로는 아파트단지 및 주거지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상업성 및 배후지 상태는 무난한 편입니다.

##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원흥역(지하철3호선)이 소재하며,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3층 건물로서,  
외벽 : 외장 석재 및 강화유리 마감  
내벽 : 몰탈위 페인팅,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칼라샷시창

## (4) 이용상태

복도에서 육안 확인상 5개호 전체 벽체 구분이 없는 일체의 근린생활시설 구조로서, 현황 장기간 상가 이용하지 않은 공실 상태로 판단됩니다.

## (5) 설비내역

공용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장형의 토지로서 인접지 및 인접 도로와 등고 · 평탄합니다.

### (7) 인접 도로상태 등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 15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상승택지개발), 종로2류(폭 15m-20m) (2013-07-04)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 (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 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드림아이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지역대학 서부학습센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2025-08-26) (외국인등대상, 대상용도(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 (9) 공부와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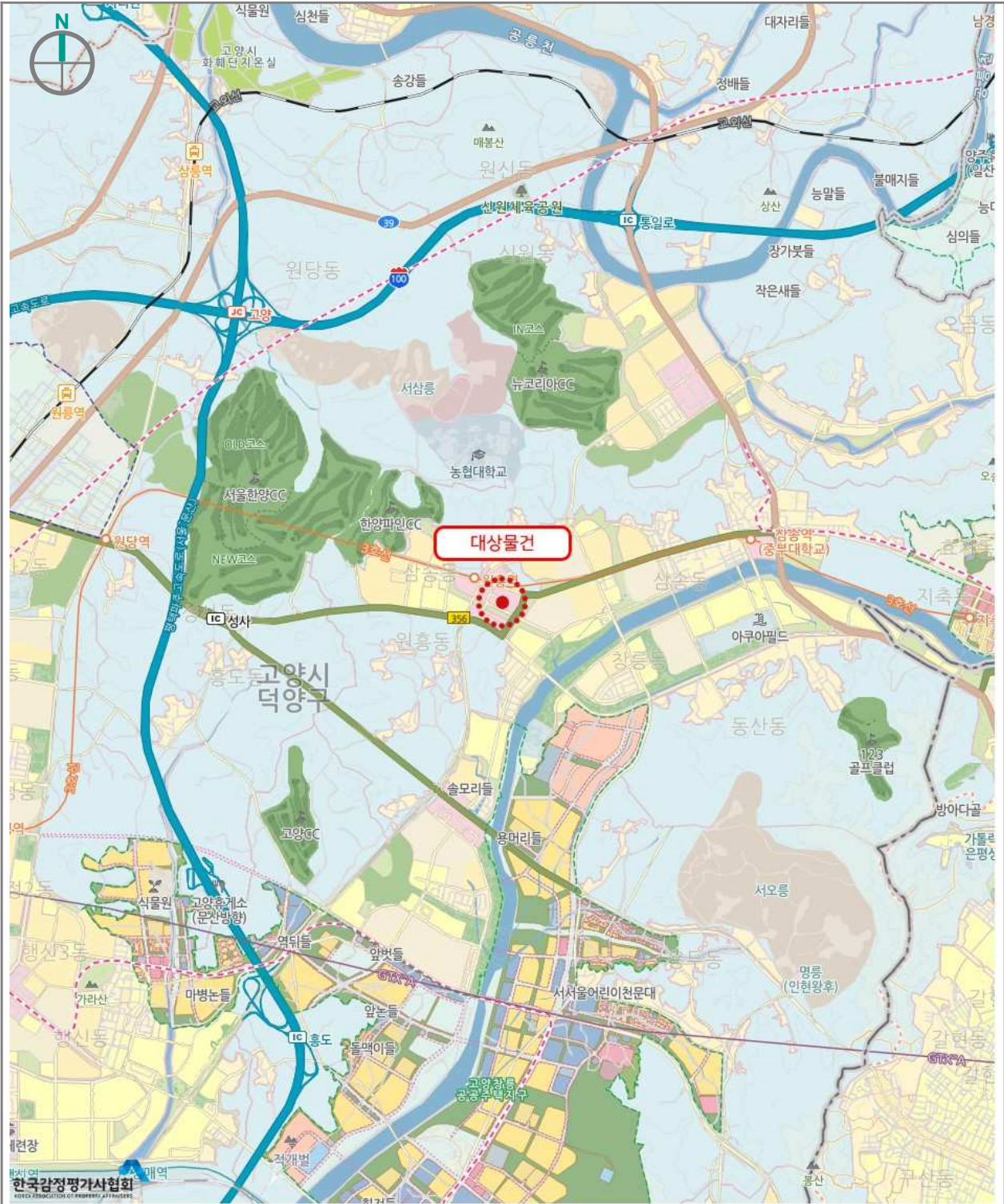
해당사항 없습니다.

###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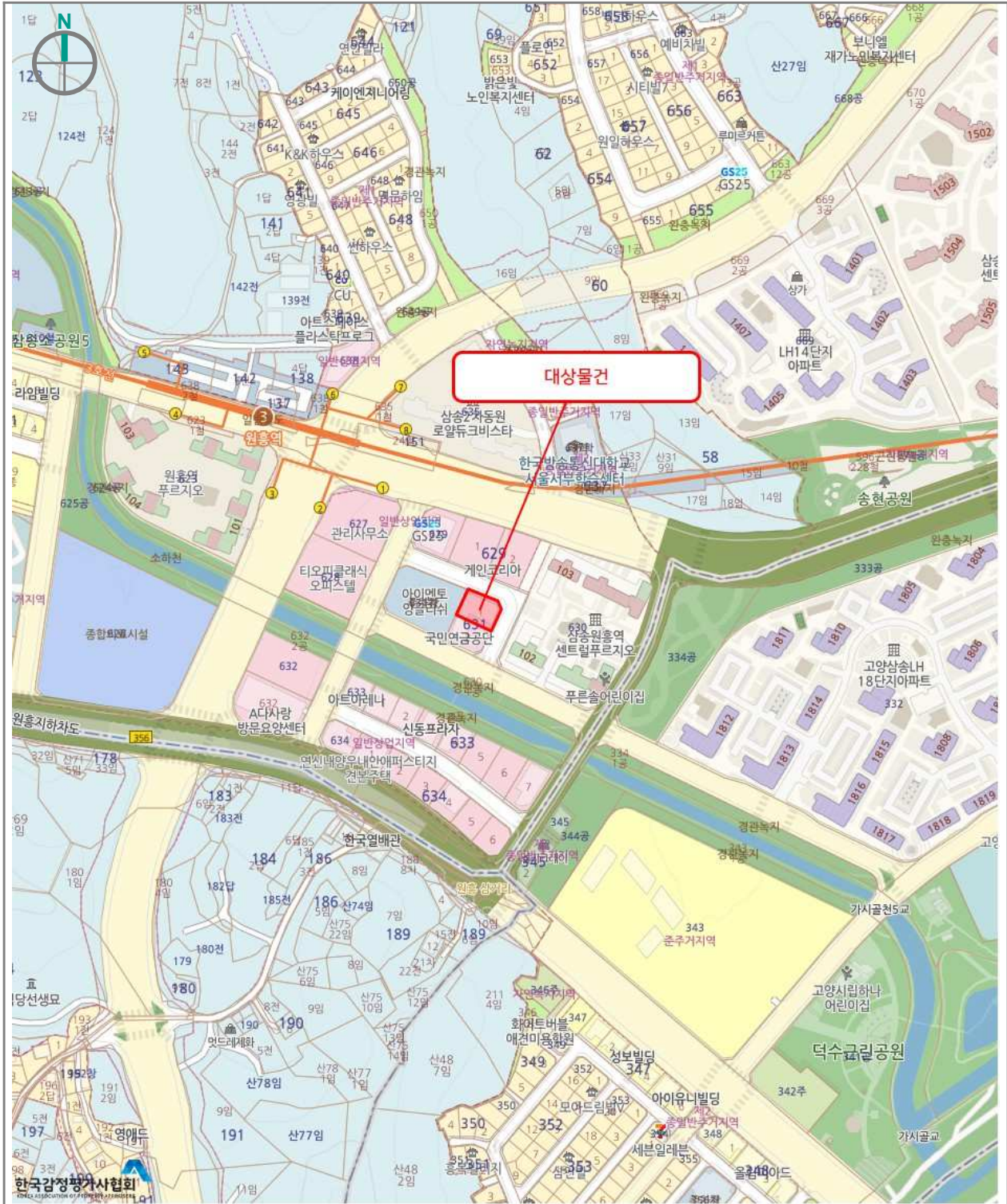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6층 제601호 외



# 상 세 위 치 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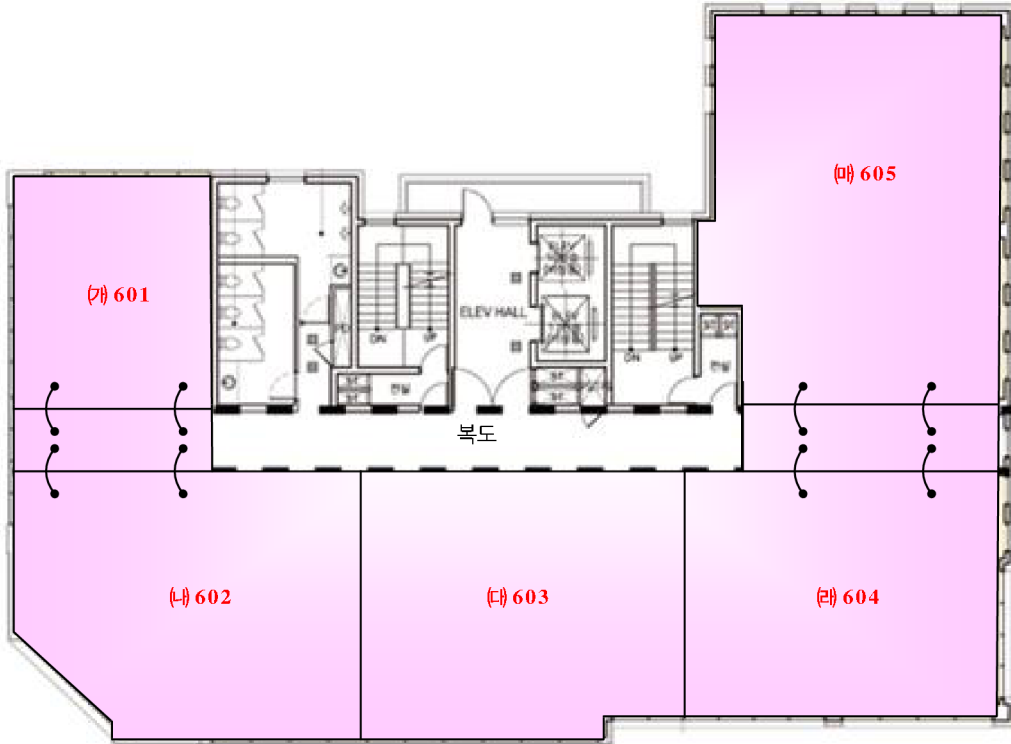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1-1 아뜨리에프라자 제6층 제601호 외



# 건물이용상태 및 임대내역



[ 제6층 호별배치도 및 제601호 외 내부구조도 ]



#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 - 남동측에서 촬영】



【본건 전경 - 북서측에서 촬영】

# 사 진 용 지

---



【내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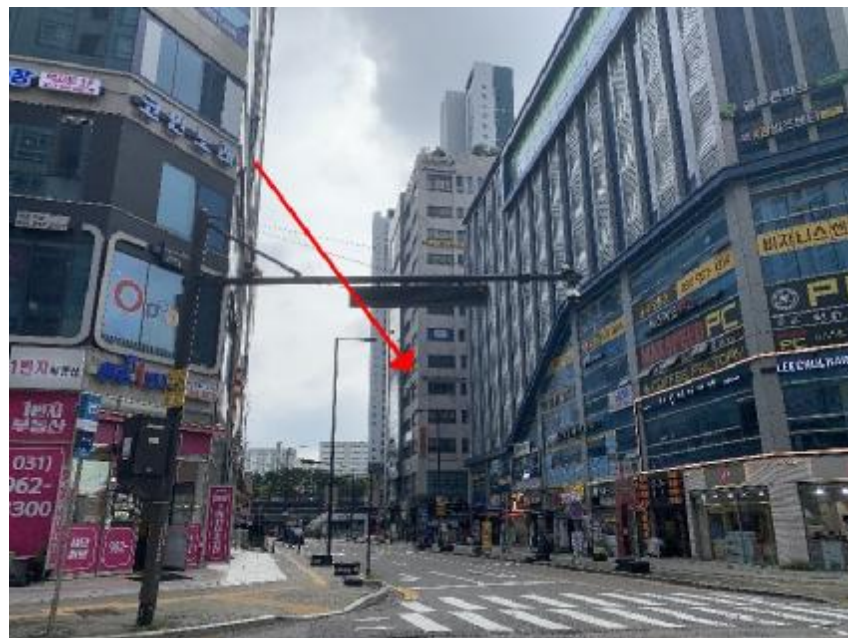


【내부 전경】

# 사 진 용 지



【주위 전경 - 남측에서 촬영】



【주위 전경 - 북서측에서 촬영】